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06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김용호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경훈,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 석, 박성연,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송경택,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종환,
이희원,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35
명)

1. 제안이유

- '25.1.1일자로 서울시 기반시설 총괄관리 업무가 기존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에서 건설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의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소관부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건설기술정책관으로 변경하고 당 연직 위원에 재난안전실장을 추가하며, 위원회 간사를 기술심사담당관으로 변경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 구조문대비표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건설기술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실장”을 “재난안전실장, 교통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재난안전실 담당과장”을 “기술심사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본원칙)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반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생략) ② (생략)	제3조(기본원칙) ----- ----- -----.
제15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u>재난안전실장</u> 으로 한다. 1. (생략) 2. 당연직 위원 : <u>교통실장</u> , 재정기획관, 물순환안전국장, 서울아리수본부장, 서울교통공사 사장,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⑤ (생략)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u>재난안전실 담당과장</u> 이 된다.	제15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건설기술정책관</u> -----. 1. (현행과 같음) 2. ----- <u>재난안전실장</u> , <u>교통실장</u> ----- ----- ----- ----- ⑤ (현행과 같음) ⑥ ----- <u>기술심사담당관</u>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 자로 서울시 기반시설 총괄관리 업무가 기존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에서 건설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본조례의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소관부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